

#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796-8364(대표전화), 796-8365, 796-4108/9, 796-8366(FAX), Hitel/ PC Serve-ID : rights

## 부정부패방지 관련법안의 심의 및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

수신:

발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소장 박호성 · 서강대 정치학)

제목: 부정부패방지 관련법안의 심의 및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9월 10일 창립한 단체로서 의정활동의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전진한 정착을 그 활동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감시센터의 주된 활동은 '헌법에 명문화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국회와 의원이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감독하고 독려·촉구하는 것'입니다.
2. 지난 10월 4일 '오늘의 의회·의회개혁·의정감시'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을 개최한 이래 '국정감사에 대한 여야의원 설문조사', 각종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속에 더욱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충격적인 부정부패상은 우리사회를 그 뿐만 아니라 병들게 하는 '사회적 병폐'이기에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지난 170회 정기국회가 파행과 공전으로 치달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 이하 전 국회의원께 전하며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토론과 대책이 조속히 수립될 것을 촉구합니다.

## 【의견 요지】

제 170회 정기국회는 과행과 공전으로 잇따른 대규모 공직비리를 근절시킬 법 제를 마련하는데 소홀했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상정 되었던 다음과 같은 부정방지 관련 법안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171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심의 및 입법화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1.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정부 제출안/11·17 본회의 의결)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2.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시민단체 청원안)의 심의·입법을 촉구한다.**
3. **예산부정방지법(민주당 제출입법안)의 심의·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척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종합적인 「부정부패 방지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정부패 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 학계, 여야 정당이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취지문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부패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다리가 무너지고 도itch에서 뿌리까지 썩어있는 공무원 사회의 실상이 그 도를 지나쳐 넘쳐흐르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감증은 쉽사리 치유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성수대교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죄워진 것은 고작 언론과 세간의 도덕적 비난 일 뿐이다. 인천북구청과 부천의 대규모 세무비리에 이어 온나라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세사건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발본색원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충격적인 부패의 실상이 밝혀지고 이러저러한 처방이 내려져도 우리사회 저변에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짙게 깔려 있다. “그만한 일이 언제는 없었냐”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근절되겠냐”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국정지표-신한국 창조의 제1 덕목은 ‘깨끗한 정부’이다. 그 개혁의 신호탄으로 집권초반 대대적인 사정과 정치권 수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법치에 근거하지 않은 사정은 몇가지 제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제 정부가 약속한 개혁의 청사진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는 국민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공무원사회의 경악할 범죄상에 대해 김영삼 정부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과거 정권으로 부터의 악습’을 탓하고 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을 통치정신으로, 깨끗한 정부를 국정의 제일 덕목으로 내세운 정부라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최근 ‘세계화’라는 집권중반기 통치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정부가 이러한 비전과 포부를 밝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구호가 성장우선주의의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 서는 충실히 내치의 근거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미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 각 부문의 경쟁력이 균형과 보완 속에 아래로부터 체계있게 성장해 나아가는가가 긴 안목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판가름 할 것이다. 러시아위에 다리가 무너지고 대낮에 도심에서 가스관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세계화’는 한낱 정치적 수사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170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모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종합대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직 사회의 부패상은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 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그 존망을 위협하는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부분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어 놓을 수도 부패불감증을 치료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핵심은 ‘부정부패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부패방지기본법」(가칭)은 선진국 및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제정된 바 있다. 싱가포르의 『부폐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대만의 『동원감란시기징치탐오조례(動員勘亂時期懲治貪污條例)』, 『장려보호검거탐오독직(獎勵保護檢舉貪污濫職)』, 『변법(辨法)』, 말레이지아의 『부정행위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POCA)』 홍콩의 『뇌물방지법』, 태국의 『독직 및 부폐방지법』, 인도의 『부폐행위 방지법』, 미국의 『정부윤리법』, 영국의 『부폐행위방지법』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러한 「부정부폐방지기본법」(가칭)은 부정부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 그리고 여야 정당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만이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부정부폐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정부폐 방지 관련법안의 심의 및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170회 정기국회는 과행과 공전 속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이러한 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는 여야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폐 방지 관련법의 입법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같은 취지아래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종합적인 법안의 입법 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상정된 다음과 같은 부정방지 관련법의 심의 및 입법화가 171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1)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정부 제출/11·17의결)의 재검토
- (2)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시민단체 청원안)
- (3) 예산부정방지법(민주당 제출입법안)

2. 종합적인 부정부폐방지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촉구한다.

- (1) 「부정부폐 방지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2) 「부정부폐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 학계, 여야 정당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994년 12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